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926호)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11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마련(안상훈, 서영석의원안)	4
2.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마련(서영석의원안)	9
3. 기록보존 과실 관련 교육 근거 신설(안상훈, 서영석의원안)	12

I. 개요

1.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92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19.

(3) 회 부 일 : 2024. 8. 20.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다. 주요내용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0조의2 및 제43조).

2.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8.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근거 마련(안상훈, 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신설).

현 행	안상훈, 서영석의원안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 <u>1.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u> <u>2.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u> <u>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
2. 제19조제3항에 따른 담당의사의 교체에 관한 심의
3.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상담
4.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제6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와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1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가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되어 18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현황 >

(2024. 10. 기준)

연번	의료기관명	지정 연도	관할 지역 (광역 지자체)	위탁 기관 수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8년	서울 서부	14
2	국립중앙의료원	2018년	서울 동부	7
3	국립암센터	2018년	경기	25
4	충북대학교병원	2018년	충북	11
5	전북대학교병원	2018년	전북	11
6	영남대학교병원	2018년	대구, 경북	24
7	부산대학교병원	2018년	부산, 울산, 경남	20
8	제주대학교병원	2018년	제주	8
9	충남대학교병원	2019년	충남, 대전, 세종	15
10	인하대학교병원	2019년	인천	15
11	강원대학교병원	2020년	강원	12
12	전남대학교병원	2020년	광주, 전남	16
13	이손요양병원	2024년	부산, 울산, 경남	6
총 계				184

* 자료: 보건복지부

□ 그런데 현행법에는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가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원 구성 요건 등이 미비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미비를 해소하고, 공용윤리위원회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제2항에 따른 업무 중에는 의료기관 스스로의 업무를 전제로 한 제3호와 제4호의 사항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

지 못하는 것은 공용위원회에게 있어 수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2항제1호에 국한하거나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만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로 해제 사유를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은 규정되어 있으나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한의사협회) 동법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 및 공용윤리위원회 위탁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에서 정부의 공용윤리위원회의 용이한 지정해제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동법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한 설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이 타당함.
- (대한중환자학회)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중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고 평가할 주체가 분명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없음. 또한, 심의 대상 환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고,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공용윤리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과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해제해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2. 전문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근거 마련(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 8항 신설).

현행	서영석의원안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생략)	제14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중단 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에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공용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13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가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되어 156개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각 의료기관별 윤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공용윤리위원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용윤리위원회를 다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개정안이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목적으로 규정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사실상 현재 공용윤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운용 중인 공용윤리위원회가 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여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그렇다면 전문공용윤리위원회가 공용윤리위원회와 차별화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정목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제6항을 개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 대신 ‘제2항제1호의 업무’만을 공용위원회의 업무로 특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현재도 공용윤리위원회가 권역 내 개별 윤리위원회 지원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용윤리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기능 중복 등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전문공용윤리위원회의 정의, 목적,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 그 개념과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 자체가 부재한 바, 전문공용윤리위원회에 관한 정의 및 지정 등에 관한 의료인 전문단체와의 구체적인 정립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대한중환자의학회) 현재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공용윤리위원회 역할이며, ‘전문’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다고 하여 공용윤리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공용윤리위원회와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의 혼란이 우려됨.

3. 기록보존 과실 관련 교육 근거 신설(안상훈, 서영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기록 보존 관련 과실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안상훈의원안	서영석의원안
<신설>	제20조의2(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명령의 세부절차, 교육 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교육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및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명령의 세부절차, 교육 기관,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제20조의2에 따른</u> <u>교육명령을 이행하</u> <u>지 아니한 자</u>	
2.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1.·2.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3. <u>제20조의2에 따른</u> <u>교육명령을 이행하</u> <u>지 아니한 자</u>
3. (생략)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해당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동법 시행(2017. 8. 4.) 이후 처벌 사례 없음.

1.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2.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판단 결과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4.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5.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6.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7.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중요한 기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8.3.27.>
2. 제20조 각 호에 따른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한 자

□ 그런데, 해당 조항은 허위 기록에 대하여 고의·과실의 구분 없이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실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두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 또는 환자 및 가족의 의사 확인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의로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를 나누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라는 표현을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더불어 교육을 통한 제도 이행 역량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법무부) 교육명령의 발령요건인 “과실이 발생한 경우”는 과태료의 요건을 정하는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입법례를 발견하기 어렵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소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는 바,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법집행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과실보다 중한 고의를 요건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책임의 소재가 더 높은 고의를 교육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움.

- (대한의사협회) 동 개정안은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허위가 있는 경우 교육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허위기록 작성에 대한 벌칙 조항(제39조)를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추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중복 적용이나 선택적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현행 벌칙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료윤리학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등의 까다로운 과정과 해당 과정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도치 않은 오류를 ‘과실’이라 정하는 경우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 법적 갈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인의 과실 판단을 분명히 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하여 다양한 제도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함께 이뤄져야 함.

문 의 처
02)6788-5509